

예 산 총 칙

2009년도 간주예산 1 차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22,060,504	6,661,815
일반회계	205,794,451	6,173,834
특별회계	16,266,053	487,982
기타특별회계	16,266,053	487,98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37,875	13,13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64,560	13,937
주차장특별회계	8,291,994	248,76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31,013	12,930
기반시설 특별회계	190,611	5,718
재정비축진 특별회계	6,450,000	193,5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067,28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